

【 3 】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재선출에 따른 후보자 추천의 건

발의년월일 : 1995. 9. 11

발의자 : 李興圭의원외 2인

 제안이유
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재 선출에 따른 입후보자를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 코자 하는 것임.

 주요골자

- 추천근거 :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

- 추천대상자
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구분
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
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비경력

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4조의2(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·차단)의 제1항,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상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조치

【 4 】 양주군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

발의년월일 : 1995. 9. 7

발의자 : 洪在龍의원외 2인

 제안이유

의원신분증을 현대 감각에 맞도록 형태, 크기, 색상을 조정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신분증 크기를 5.5cm × 8.1cm에서 8.5cm × 5.5cm로 함. (제3조 제1항)
- 사진의 크기를 3.0cm × 2.5cm에서 5.0cm × 3.9cm로 함. (제3조 제1항)
- 후면 중앙에 하늘색 의회마크를 넣는다. (제3조 제2항)
- 글자크기를 신분증 규격에 맞게 조정함. (제3조 제2항)

규칙 제 호

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

양주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중 “그 규격, 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”를 “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. 그 규격, 제식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”로 하고 동조 제2항중 “황색으로 한다”를 “황색바탕으로 하고 중앙에 의회마크를 넣되 의회마크는 하늘색으로 한다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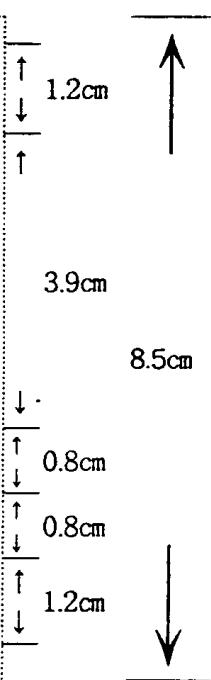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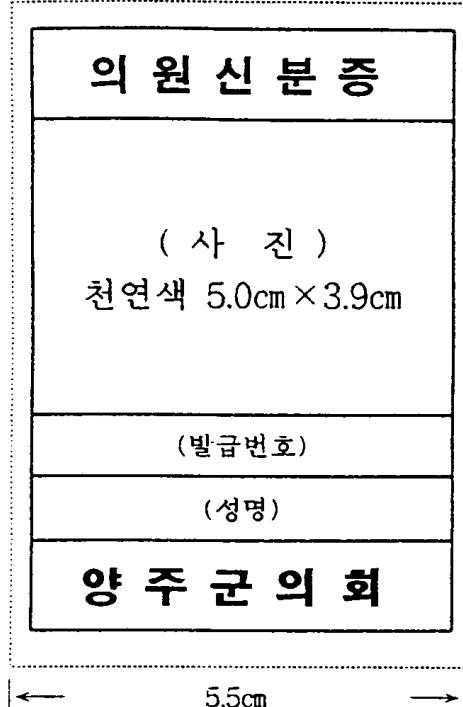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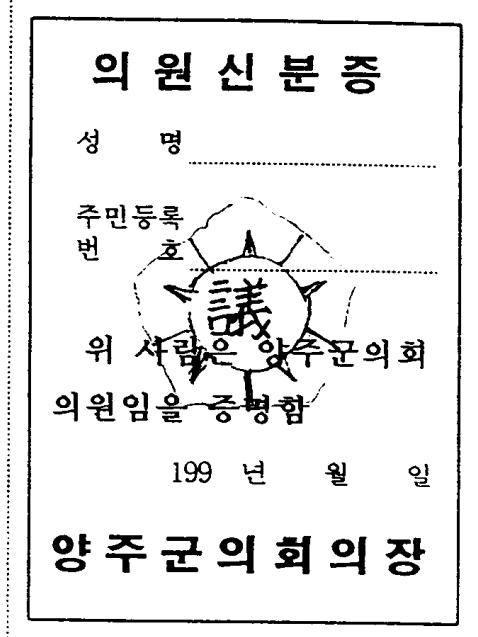
신·구조문 대비표

별표

【 전면 】



【 후면 】



(주) 1. 사진 규격등

- 1) 사진 천연색사진 5.4cm × 3.9cm
- 2) 성명 (흑색 모필로 기입할것)

2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

글자의 구분	글자의 크기	글자의 종류
의원신분증	16 포인트	고딕체
의회명	16 포인트	고딕체
발급기관장	16 포인트	고딕체
위 사람은 증명함	12 포인트	명조체
발급일자 및 기타	10 포인트	명조체

3. 지질은 인쇄용지 190 g / m²
4. 신분증은 P·V·C (투명한 것) 으로 포장한다.
5.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.